

예 술 의 전 당 정 관

제정 : 2000. 9. 9
개정 : 2000. 12. 8
개정 : 2001. 5. 31
개정 : 2003. 3. 4
개정 : 2006. 1. 10
개정 : 2007. 6. 8
개정 : 2009. 1. 2
개정 : 2009. 8. 13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설립근거 및 명칭)

본 법인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예술의전당 (이하 “전당”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전당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공간의 운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4 조 (사업)

전당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한다.

- (1) 전당의 운영
- (2)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 (3) 문화예술 교육사업
- (4)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과 조사연구
- (5)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 (6) 상주단체의 설립과 운영
- (7) 후원회운영 등을 통한 운영보존자금의 적립사업
- (8) 기타 제3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

제 2 장 임 원

제 5 조 (임원)

1. 전당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사장 1인
 - (3) 사무처장 1인
 - (4) 이사 15인 이내 (당연직이사 4인 포함)
 - (5) 감사 1인
2. 사장과 사무처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 6 조 (임원의 임면)

1. 이사장, 사장 및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면한다.
2. 사무처장은 사장이 이사회 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국립합창단 예술감독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면한다.

제 7 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사장은 전당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전당의 경영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전당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사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사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사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 (임기)

1. 이사장, 사장, 사무처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과 사무처장의 임기는 임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잔여임기로 한다.
3. 임원은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조 (비상임 임원의 대우)

이사장, 감사 및 비상임 이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감사의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무실 및 활동비를 제공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이 사 회

제 11 조 (구성)

1. 전당은 그 설립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전당 경영에 관한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 사장, 사무처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 12 조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사장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이사장은 제2항에 의한 요구 시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4.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3 조 (기능)

1.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변경,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 (4) 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제한, 기채에 관한 사항
 -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6) 이사장, 사장 또는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및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명의로 제출하는 사항
 - (7) 정관에 의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2.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에게 전당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전당의 재원확보 기타 필요한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4. 임원 또는 3급이상 보직직원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소가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기타 재산관련 민사소송에 관한 사항은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 4 장 집 행 기 관

제 15 조 (예술감독)

1. 사장을 보좌하여 예술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예술감독을 둔다.
2. 예술감독은 비상근으로 한다.
3. 예술감독은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4. 예술감독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마비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예술감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5. 기타 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16 조 (예술감독의 임면)

예술감독은 사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제 17 조 (예술감독의 임기)

1. 예술감독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예술감독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기는 그 잔여임기로 한다.
3. 예술감독은 연임할 수 있다.

제 18 조 (사무처)

1.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2. 전당의 조직은 직제규정에 의한다.

3. 직제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 (직원의 임면)

1. 전당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2.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20 조 (자문기구)

1. 전당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두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자문기구의 명칭 및 운영 등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재 산 및 회 계

제 21 조 (재산)

1. 전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전당 건립시 출연한 재산과 국가로부터 무상양수 받은 재산 그리고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전당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및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한다.

제 22 조 (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고자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본재산은 매년 초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수입과 지출)

1. 전당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수익사업, 지원금, 보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적립금을 운영하기 위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 24 조 (회계연도)

전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25 조 (사업계획 및 예산)

1. 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장은 취임후 2개월 이내 또는 이사회 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당의 발전 및 자원조달 방안을 포함한 종합사업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6 조 (결산보고)

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 의결을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 27 조 (해산)

전당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을 건의한다.

제 28 조 (잔여재산의 귀속)

전당을 해산할 경우 그 잔여재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 29 조 (정관의 변경)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0 조 (시행규칙)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당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1. 이 정관에 의한 전당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예술의전당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2. 이 정관 시행당시 재단법인 예술의전당 임,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전당의 임, 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및 제10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 개정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만료일인 2002.10.25까지 개정이전의 정관이 적용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예술감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 당시 재임중인 예술감독의 임기는 취임 당시로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사무처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 당시 재임중인 사무처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